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한창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90

발의연월일: 2024. 11. 1.

발 의 자: 한창민 · 민병덕 · 용혜인

강준현・김 윤・정준호

정혜경・조 국・김용민

김남근 • 차규근 • 오기형

한정애 의원(13인)

제안이유

온라인을 통한 유통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전 산업분야에 확산되고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의 거래의존도는 심 화되고 있음.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 등 그 특수성에 따른 시장 집중효과가 쉽게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시장지배적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 체계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시장지배적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온라인 플랫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 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지배적지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 이용자를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 1) 양수인등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함(안 제5조).
 - 2) 양수인등은 종전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이루어진 행정처분의 효과 등을 승계함(안 제6조).
- 라.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시장지배적 행위 금지
 - 1)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해관계자의 주식·지분·자산 의 인수를 금지함(안 제7조).
 - 2)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를 강화할 목적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소유, 지배하거나 경영간섭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8조).
 - 3)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분리된 계열회사의 직무를 겸하거나, 분리된 계열회사와 거래행위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9조).
- 마.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차별적 취급행위의 금지
 - 1)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

업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0조).

- 2)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1조).
- 바.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거래등에 필수적인 이용자의 정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이전하도록함(안 제12조).
- 사.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시장지배적 행위 및 부당한 차별 취급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함 (안 제13조).
- 아. 시장지배적행위 등을 위반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그 이행 확보 수단을 마련함(안 제14조 및 제17조).
- 자.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 과태료
 - 1) 이 법을 위반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 16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 2)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시장지배적지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온라인 플랫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 또 는 관련된 둘 이상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이하 "거래등"이라 한다) 을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시장지배적 플랫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온 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 가. 직전 사업연도에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기준 월평균 활성 이용자 수(1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정 행동을 취한 이용자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천만명 이상이거나, 국내 기준

월평균 활성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1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정 행동을 취한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사업자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만명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활성 이용자 또는 활성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를 1개월로 환산한 수를 기준으로 한다.

- 나. 직전 사업연도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매출액(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이 3조원 이상이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조에 따라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지정할 당시 시가총액이 30조원을 초과하는 회사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온라인 플랫폼.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 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 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음의 사항이 함께 결합된 서비스

- 1)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 제공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연결수 단 제공
- 나. 재화등에 대한 청약의 접수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서비스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 결제, 배송지원 및 고객관리 등의 서비스
- 4.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란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이하 "중개거래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5.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중개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 자를 말한다.
- 6. "소비자"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구매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 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7. "이용자"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소비자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 8. "필요적 거래 상대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접속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 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이용자에게

- 효과적으로 응대하는 데 필요한 도구나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 9. "사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 10. "지배"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해당 사업자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하는 것
 - 나. 해당 사업자의 연간 총 수익 중 100분의 25 이상에 대하여 권 리를 가지는 것
 - 다. 해당 사업자가 해산할 경우 그 사업자의 잔여자산 중 100분의 25 이상에 대하여 분배청구권을 가지는 것
 - 라. 해당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전체 이사 중 100분 의 25 이상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는 것
 - 마. 해당 사업자가 신탁인 경우 사업자가 고용한 전체 신탁 관리자 중 100분의 25 이상에 대하여 임명할 권한을 가지는 것
 - 바. 그 밖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실 질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
- 11. "경영간섭"이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략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민감한 정보나 권한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 12. "데이터"란 시장지배적 플랫폼 및 그 경쟁사업(잠재적인 경쟁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의하여 수집되거나 제공된 다음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특정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정보 또는 특정 사업자와 합리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정보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 는 정보
- 나. 소비자에게 연결되거나 정당하게 연결될 수 있는 정보로서 공 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정보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지정 등

- 제4조(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지정과 해제) ① 공정거래위원 회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 하면서 그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필요적 거래 상대방인 자를 시장지 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처분을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이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이하

-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라 한다)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1 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지정해제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2.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사실 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한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지위를 승계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의무

- 제7조(기업인수합병 등의 금지) ①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의 주식·지분·자산을 인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지정된 때에 이해관계자의 주식·지분·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에는 그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자의 주식·지분·자 산을 모두 처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주식· 지분·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할 수 있다.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거래 인 경우
 - 이해관계자 또는 인수한 주식의 발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 재화등의 판매 또는 공급을 위하여 시장지배적 플랫폼과 경쟁을 하거나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나. 재화등의 판매 또는 공급에 관하여(시장지배적 플랫폼에서 제 공되거나 시장지배적 플랫폼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해당 시장지배적 플랫폼이나 그 중개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 ④ 자산의 인수행위로 인하여 추가적인 데이터 축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시장지배적지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 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8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시장지 배적지위를 강화할 목적으로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분야를 소유, 지배하거나 경영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재화등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사업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 용사업자를 대상으로 재화등을 제공하는 사업
 - 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시장지배적 플랫폼에 접속하기 위한 조건
 - 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시장지배적 플랫폼 내에서 그의 재화등에 우선적 지위나 순위를 부여받는 조건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발생시키는 사업

- 가.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아닌 다른 사업 분야를 소유하거나 지배하여 이용자와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 나. 경쟁사업자에게 자신의 재화등을 우대하도록 하는 경우
- 제9조(겸임 등 금지)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임직원(시장지 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사업 자를 포함한다)이나 시장지배적 플랫폼에 대하여 지배권을 가진 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계열 분리에 앞서 소유하거나 지배하였던 사업자(이하 "분리된 계열회사"라 한다)의 직무를 겸하거나, 분리된 계열회사와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차별적 취급행위의 금지)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그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운영에 관하여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차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직 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신의 재화등을 다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것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 2. 다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재화등을 자신의 것보다 불리하게 취급하거나 배제하는 행위
 - 3. 서로 유사한 지위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차별하는 행위
- 제11조(그 밖의 차별적 취급행위의 금지)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 자는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운영체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양을 포함한다)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접속, 상호운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2.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등의 구매 또는 이용을 조건으로 시장지배 적 플랫폼에 접속하게 하거나 우선적 지위 또는 순위를 부여하는 행위
- 3. 이용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거래등으로 인하여 생성된 데이터 등 시장지배적 플랫폼에서 얻어지거나 활성화된 비공개 데이터를 부당하게 자신의 재화등의 제공 또는 제공 지원에 이용하는 행위
-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계약 또는 기술적 제한을 통하여 제3호에 따른 데이터를 다른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 5. 이용자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운영의 기본값(이용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제안하는 재화등으로 연결해주는 것을 말한다)의 변경·제거 등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6.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사업상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아닌 다른 접근경로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행위

- 7. 사용자 인터페이스(이용자와 온라인 플랫폼 사이의 의사소통 매개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하여 자신의 재화등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것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 8.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가격책정에 개입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9. 이용자의 거래등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행위
- 10. 관련 법령 위반을 신고한 이용자에게 보복하는 행위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12조(이용자 정보의 이전의무) ①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거래등에 필수적인 이용자의 정보를 동의를 얻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정보의 이전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제1항의 정보가 체계적·통상 적으로 사용되고, 기계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이전 하여야 한다.
 - ③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제1항의 정보를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이전할 수 있도록 제3자의 접속이 가능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④ 이용자 정보, 판독 형식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세부적인 기준 또는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보칙

- 제13조(손해배상) ①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제10조 또는 제 11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손해를 받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취득한 경제 적 이익
 -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 5.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6.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재산상태
 - 7.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 ②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4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장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

자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해당 행위의 중지
- 2. 주식, 지분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 3. 임원의 사임
- 4. 영업방식 또는 영업 범위의 제한
- 5. 영업의 양도
- 6. 계약조항의 삭제
- 7.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8.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유지
- 9.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는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1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를 위반하여 주식, 지분 또는 자산을 취득 또는 소유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지분 또는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 또는 제12조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또는 해당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해당 사업 분야에서 얻은 수익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 또는 수익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

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수 있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 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1. 분할되는 회사
-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를 위반하여 제14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이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하여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 일당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지분 또는 자산의 취득가 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

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 제9조 또는 제12조를 위반하여 제14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하여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또는 해당 사업자가 위 위반 행위를 한 기간 해당 사업 분야에서얻은 수익의 1만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 또는수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1일당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7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명령을 받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해당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없고, 권리 또는 권한의 처분명령을 받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해당 권리 또는 권한을 행사할 수없다.

제5장 벌칙

-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조를 위반하여 이해관계자의 주식, 지분, 자산의 전부나 일부를 인수한 자
 - 2. 제8조를 위반하여 사업 분야를 소유, 지배하거나 경영간섭을 한자
 - 3. 제9조를 위반하여 분리된 계열회사의 직무를 겸하거나 분리된 계 열회사와 거래행위를 한 자
 - 4. 제10조를 위반하여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자
 - 5. 제11조제8호를 위반하여 가격책정에 개입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
 - 6. 제11조제10호를 위반하여 보복하는 행위를 한 자
 -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11조(제8호와 제10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並科)할 수 있다.
- 제2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 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2.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21조(양벌규정)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시장지배적 중개사업자의 업무에 관하 여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 개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 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제5조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같은 조에 따라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 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